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5 선고 2023나20457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7. 5 선고 2023나2045775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12 선고 2022가단11660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강남

담당변호사 김진, 양재혁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근

변론종결 2024. 5. 31.

판결선고 2024. 7. 5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9. 12. 선고 2022가단11660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. 3. 3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소외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. 4. 1. 접수 제481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서 2면 7행의 “약속어음” 다음에 “(이하 ‘이 사건 약속어음’이라 한다)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서 2면 14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『다. C은 2022. 3. 14.경 원고에게 ‘2022. 3. 14. 경매취하서 작성 후 100,000,000원, 등기부등본 상 경매취하 완료 후 일주일 이내로 200,000,000원, 2022. 5. 15. 이전으로 200,000,000원, 2022. 6. 15.부터 매월 100,000,000원을 지급하고, 이자는 2022. 4.부터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 지급한다.’는 내용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‘상환계획표’를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를 요청하였고,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경매취하서를 작성해주자 원고에게 100,000,000원을 변제하였다. 원고가 2022. 3. 14.경 위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하여 위 부동산강제경매 기입등기가 같은 달 17일 말소되었고, C은 같은 달 23일경 원고에게 100,000,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.』

○ 제1심 판결서 3면 2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『마.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C으로 하여 2016. 5. 13.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, 채권최고액 300,000,000원의, 2020. 9. 17.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, 채권최고액 364,000,000원의, 2022. 3. 23.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, 채권최고액 260,000,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.』

○ 제1심 판결서 3면 9행의 “이 법원”을 “제1심 법원”으로 수정한다.

○ 제1심 판결서 3면 10행의 “국고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수정한다.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피고는, 원고가 C에게 송금한 금액이 합계 1,089,153,000원인데, C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합계 1,103,050,000원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4다87595 판결 등 참조).

원고는, C에게 대여금 원금으로 합계 1,146,000,000원을 송금하였고, 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에 대한 변제로 합계 551,000,000원(위 1.다.항과 같이 2022. 3. 14.경 및 같은 달 23일경 각 수령한 100,000,000원 합계 200,000,000원을 포함한 금액임)을 송금 받았으므로,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원금이 595,000,000원(= 1,146,000,000원 - 551,000,000원)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,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405,000,000원(1,000,000,000원 - 595,000,000원)이 그 원인채권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.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중 원고가 소멸되었음을

자인하는 위 405,000,000원 이외의 부분에 대한 원인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갑 제11, 12호증의 각 기재, 제1심 법원의 성북구청장,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.

2)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) 피고는,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주식회사 F(이하 'F'라 한다)에 대하여 350,000,000원, G에 대하여 200,000,000원 등 합계 550,000,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,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,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,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

것이다(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).

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이 F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차전4047호로 대여금 3억 5,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던 사실, 2022. 8. 19. C과 G 사이에, G이 C에게 2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갑 제13, 14,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, 즉 F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, 이에 따라 C과 F 사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422호로 진행된 대여금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3. 5. 30. C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점,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105529호로 C의 G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, G은 위 사건에서 C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, C이 G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그 밖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증여 당시 F와 G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) 피고는,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C이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나아가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,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,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,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

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(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)이 이루어진 경우에는,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(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).

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거나 그 협의 후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문광섭, 판사 최성보, 판사 이준현